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33

발의연월일: 2020. 7.30.

발 의 자 : 추경호 · 박덕흠 · 정진석

이채익 • 서일준 • 김예지

이명수 · 임이자 · 구자근

이종배 · 김희국 · 권성동

허은아 의원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7월 21일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석유제품의 범위중 석유중간제품을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 및 유분'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법」에서는 과세대상 물품을 휘발유·등유·경유·중유 등으로 단순 구분 하고 있음.

따라서 석유중간제품을 구매·수입하여 정제 원료용으로 투입시 결국 원료에 과세됨으로써 특정제품의 소비행위에 부과하여야 하는 개별소 비세법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됨. 또한 휘발유 및 등·경유 등 과세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물량은 공제·환급이 가능하나, 나프타·항공 유·아스팔트 등 내수용 비과세 제품제조에 소요된 물량은 공제·환급이 불가능해짐.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원가상승을 초래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취지에 맞게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10호).

법률 제 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을 "농약 제조용, 석유화학공업용 또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석유류의 조건부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 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제18조(조건부면세)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	
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	
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	
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	
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	
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	10
료 제조용, <u>농약 제조용 또는</u>	<u>농약 제조용, 석유</u>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	화학공업용 또는 석유제품 생
하는 석유류	산공정용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